

-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 사 보 고

의 안 번 호	398
------------	-----

2019년 2월 27일
교 통 위 원 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9년 2월 1일, 김정태 의원 외 19명 발의

나. 회부일자 : 2019년 2월 7일

다. 상정일자

- 제285회 서울특별시의회 제3차 교통위원회(2019년 2월 27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김정태 의원)

가. 제안이유

- 경찰관서 및 소방관서 비롯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람의 인명을 구호하기 위한 순찰차, 소방차 등의 긴급차량을 각 관서별로 다수 보유하고 있어 충분한 주차장 확보는 필수적이라 할 것임

다만, 서울시는 도심지 방향으로의 승용차 이용을 억제하기 위해 교통수요 관리 측면에서 도심지 등에 대해서는 부설주차장 설치를 제

한하고 있음에 따라 도심지에 위치한 경찰관서 및 소방관서의 경우 충분한 주차장 확보가 어려워 긴급차량의 주차를 위한 주차공간이 부족한 상황임

따라서 서울시 주차정책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경찰관서 등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보유 중인 긴급차량에 대한 주차공간 확보를 통한 시민 안전 증진 차원에서 관련 내용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

나. 주요골자

- 국가·지방자치단체 청사의 부설주차장 설치제한 기준을 완화하고, 해당 기관의 공용차량 주차장의 주차 대수를 부설주차장 주차대수 제한 계산에서 제외하도록 함(안 별표 3의 3, 안 별표 3의 비고 제12호 신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입법예고

- 기 간 : 2019. 2. 12 ~ 19

- 제출의견 : 없음

라. 관련부서 의견조회 결과

- 서울시장(도시교통실 주차계획과) : 수정가결

- ▶ 도심 주차수요억제를 위해 주차상한제를 시행하고 있으나, 공공청사 주차장의 경우 설치제한이 타 시설보다 지나치게 엄격하여 필수적인 공용차량의 주차공간 확보조차 어려운 실정으로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음
- ▶ 따라서, 공공청사의 부설주차장 설치제한 기준을 완화(500㎡당 1대 → 300㎡당 1대)하는데 동의함
- ▶ 다만, 비고 신설 규정과 관련 주차대수 최고한도 산정에서 제외한 공용차량의 경우 차량의 용도 및 규모가 광범위하기에 서울시 주차정책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로 최소화하기 위해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및 시행령 제2조(긴급자동차의 종류)에서 정한 “긴급자동차”로 수정할 필요가 있음

4.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 김동수)

가. 개요

- 동 개정조례안은 서울시가 교통수요관리의 일환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이하 “공공청사”)’의 부설주차장 설치를 제한함에 따라 도심지에 위치한 경찰관서 및 소방관서 등의 경우 충분한 주차장 확보가 어려워 긴급차량에 대한 주차공간도 부족한 실정인 바, 이를 개선하기 위해 공공청사의 부설주차장 설치제한 기준을 일부 완화코자 하는 것임

나. 검토 의견

■ 공공청사 부설주차장 설치제한 관련

- 동 개정조례안은 부설주차장의 설치제한 지역에서¹⁾ 공공청사의 부설주차장 설치제한 기준을 현행 500㎡당 1대에서 300㎡당 1대로 완화하는 것으로

▲공공청사 부설주차장의 경우 설치제한 기준이 여타 시설물 보다 엄격하다는 점, ▲제한된 주차 공간으로 인해 상시 혼잡이 유발되어 교통약자가 이용하는 차량도 주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 ▲긴급차량 등 공용차량의 주차 공간 확보가 어려워 공공청사 주변 공용차량의 불법 주·정차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점 등이 반영된 것인 바, 이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할 것임

1) 동 조례 제21조(부설주차장의 설치제한지역 및 설치제한 기준 등) ① 법 시행규칙 제7조의2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는 지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한다.(이하 “주차장설치제한지역”이라 한다)

1. 별표1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에서 정한 1급지 지역 중 상업지역 및 준주거지역
2.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42조에 따른 교통혼잡특별관리구역으로서 전철역, 지하철역과 환승센터 또는 복합환승센터의 가장 가까운 출입구로부터 직선거리 500m 이내의 지역

※ 참고 : 부설주차장의 설치제한 지역에서의 시설물의 종류별 설치기준

시 설 물	최고한도
1. 위락시설	시설면적 134㎡당 1대
2.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을 제외한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정신병원·요양소 및 격리병원을 제외한다), 운동시설(골프장·골프연습장 및 옥외수영장을 제외한다), 업무시설(외국공관 및 오피 스텔을 제외한다), 방송통신시설중 방송국, 장례식장	시설면적 200㎡당 1대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시설면적 500㎡당 1대
4. 제1종 근린생활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바목 및 사목을 제외한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시설면적 268㎡당 1대
5. 골프장, 골프연습장, 옥외수영장, 관람장	골프장 : 1홀당 6대 골프연습장 : 타석당 0.6대 옥외 수영장 : 정원 25인당 1대 관람장 : 정원 167인당 1대
6. 수련시설, 공장(아파트형 제외), 발전시설	시설면적 466㎡당 1대
7. 창고시설	시설면적 534㎡당 1대
8. 기타 건축물	시설면적 400㎡당 1대

■ 부설주차장 주차대수 최고한도 산정시 공용차량 제외 관련

- 동 개정조례안은 공공청사를 신축 또는 증축하는 경우 해당 청사에서 등록·관리·운영하는 공용차량을 부설주차장 주차대수 최고한도 산정시 포함하지 않도록 하고 있으나,

공공청사 부설주차장의 설치제한 기준을 일부 완화하면서 동시에 공용차량 전체를 부설주차장 산정시 제외하는 것은 주차상한제로 대표되는 서울시 주차수요관리 정책 취지에 어긋날 수 있는 바, 시민의 안전 담보라는 동 개정조례안의 취지와도 부합되도록 공용차량 중 긴급차량으로 대상을 축소하는 것이 필요하다 할 것임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가. 수정이유

- 동 개정조례안에서 공공청사 부설주차장의 설치제한 기준을 현장 상황을 반영토록 일부 개선함과 동시에 공용차량 전체를 부설주차장 산정시 제외하는 것은 주차상한제로 대표되는 서울시 주차수요 관리 정책 취지에 어긋날 수 있다는 점과 안전 담보라는 동 개정조례안의 취지와도 부합되도록 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공영차량 중 긴급차량으로 대상을 축소하는 것이 필요하다 할 것인 바,

동 개정조례안 [별표 3]의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의 최고한도란 중 "300m²"을 "200m²"로, [별표 3] 비고 제12호 중 "「서울특별시 공용차량 관리규칙」을 비롯하여 법령 및 행정규칙, 자치법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차량정수가 정해진 해당 청사를 관리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용 차량을"을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의 긴급자동차를"로 별지와 같이 각각 수정하는 것임

나. 수정 주요골자

- 동 개정조례안 별표 3의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의 최고한도란 중 "300m²"을 "200m²"로 함(안 별표 3)
- 동 개정조례안 별표 3의 비고에 제12호 중 "「서울특별시 공용차

량 관리규칙」을 비롯하여 법령 및 행정규칙, 자치법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차량정수가 정해진 해당 청사를 관리하는 국가 및 지방
자치단체의 공용 차량을”을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의 긴급자
동차를”로 함(안 별표 3 비고 제12호)

8. 심사결과 : 수정가결

9. 소수의견 요지 :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관련 398
----------	-----------

제안년월일 : 2019년 2월 27일
제안자 : 교통위원장

1. 수정이유

- 동 개정조례안에서 공공청사 부설주차장의 설치제한 기준을 현장 상황을 반영토록 일부 개선함과 동시에 공용차량 전체를 부설주차장 산정시 제외하는 것은 주차상한제로 대표되는 서울시 주차수요관리 정책 취지에 어긋날 수 있다는 점과 안전 담보라는 동 개정조례안의 취지와도 부합되도록 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공용차량 중 긴급차량으로 대상을 축소하는 것이 필요하다 할 것인 바,

동 개정조례안 [별표 3]의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의 최고한도란 중 “300 m^2 ”을 “200 m^2 ”로, [별표 3] 비고 제12호 중 “「서울특별시 공용차량 관리규칙」을 비롯하여 법령 및 행정규칙, 자치법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차량정수가 정해진 해당 청사를 관리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용 차량을”을 “「도로교통법」 제2조 제22호의 긴급자동차를”로 별지와 같이 각각 수정하는 것임

2. 주요 골자

- 가. 동 개정조례안 별표 3의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의 최고한도란 중 “300 m^2 ”을 “200 m^2 ”로 함(안 별표 3)

나. 동 개정조례안 별표 3의 비고에 제12호 중 “「서울특별시 공용차량 관리규칙」을 비롯하여 법령 및 행정규칙, 자치법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차량정수가 정해진 해당 청사를 관리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용 차량을”을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의 긴급자동차를”로 함(안 별표 3 비고 제12호)

3. 참고 사항 : 생략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동 개정조례안 별표 3의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의 최고한도란 중 "300 m^2 "을 "200 m^2 "로 한다.

동 개정조례안 별표 3의 비고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 제3호의 시설물을 신축 또는 증축하는 경우 「도로교통법」 제2조제 22호의 긴급자동차를 대상으로 구분된 주차장의 주차대수는 부설주차장 주차대수의 최고한도를 산정할 때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현 행	개정안(의원발의안)	수정안(교통위원회안)																								
<p>[별표 3] 부설주차장의 설치제한 지역에서의 시설물의 종류별 설치기준(제21제2항 관련)</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시 설 물</th> <th style="text-align: center;">최고한도</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1. ~ 2. (생략)</td> <td style="text-align: center;">(생략)</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사</td> <td style="text-align: center;">시설면적 500㎡당 1대</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4. ~ 8. (생략)</td> <td style="text-align: center;">(생략)</td> </tr> </tbody> </table> <p><비고> 1. ~ 11. (생략)</p> <p style="text-align: right;"><신 설></p>	시 설 물	최고한도	1. ~ 2. (생략)	(생략)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시설면적 500㎡ 당 1대	4. ~ 8. (생략)	(생략)	<p>[별표 3] 부설주차장의 설치제한 지역에서의 시설물의 종류별 설치기준(제21제2항 관련)</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시 설 물</th> <th style="text-align: center;">최고한도</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1. ~ 2. (현행과 같음)</td> <td style="text-align: center;">(현행과 같음)</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사</td> <td style="text-align: center;">시설면적 300㎡당 1대</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4. ~ 8. (현행과 같음)</td> <td style="text-align: center;">(현행과 같음)</td> </tr> </tbody> </table> <p><비고> 1. ~ 11. (현행과 같음)</p> <p>12. 제3호의 시설물을 신축 또는 증축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공용차량 관리규칙」을 비롯하여 법령 및 행정규칙, 자치법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차량정수가 정해진 해당 청사를 관리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용 차량을 대상으로 구분된 주차장의 주차대수는 부설주차장 주차대수의 최고한도를 산정할 때에 포함하지 아니한다.</p>	시 설 물	최고한도	1. ~ 2.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시설면적 300㎡ 당 1대	4. ~ 8.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p>[별표 3] 부설주차장의 설치제한 지역에서의 시설물의 종류별 설치기준(제21제2항 관련)</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시 설 물</th> <th style="text-align: center;">최고한도</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1. ~ 2. (현행과 같음)</td> <td style="text-align: center;">(현행과 같음)</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사</td> <td style="text-align: center;">시설면적 200㎡당 1대</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4. ~ 8. (현행과 같음)</td> <td style="text-align: center;">(현행과 같음)</td> </tr> </tbody> </table> <p><비고> 1. ~ 11. (현행과 같음)</p> <p>12. 제3호의 시설물을 신축 또는 증축하는 경우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의 긴급자동차를 대상으로 구분된 주차장의 주차대수는 부설주차장 주차대수의 최고한도를 산정할 때에 포함하지 아니한다.</p>	시 설 물	최고한도	1. ~ 2.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시설면적 200㎡ 당 1대	4. ~ 8.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시 설 물	최고한도																									
1. ~ 2. (생략)	(생략)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시설면적 500㎡ 당 1대																									
4. ~ 8. (생략)	(생략)																									
시 설 물	최고한도																									
1. ~ 2.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시설면적 300㎡ 당 1대																									
4. ~ 8.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시 설 물	최고한도																									
1. ~ 2.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시설면적 200㎡ 당 1대																									
4. ~ 8.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의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의 최고한도란 중 “500 m^2 ”을 “200 m^2 ”로 한다.

별표 3의 비고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제3호의 시설물을 신축 또는 증축하는 경우 「도로교통법」 제 2조제22호의 긴급자동차를 대상으로 구분된 주차장의 주차대수는 부설주차장 주차대수의 최고한도를 산정할 때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정안																
<p>[별표 3] 부설주차장의 설치제한 지역에서의 시설물의 종류별 설치기준(제21 제2항 관련)</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 10px 0;"> <thead> <tr> <th style="width: 50%; text-align: center;">시 설 물</th> <th style="width: 50%; text-align: center;">최고한도</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1. ~ 2. (생략)</td> <td style="text-align: center;">(생략)</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의 청사</td> <td style="text-align: center;">시설면적 500㎡당 1대</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4. ~ 8. (생략)</td> <td style="text-align: center;">(생략)</td> </tr> </tbody> </table> <p><비고> 1. ~ 11. (생략)</p> <p style="text-align: right;"><신 설></p>	시 설 물	최고한도	1. ~ 2. (생략)	(생략)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의 청사	시설면적 500㎡ 당 1대	4. ~ 8. (생략)	(생략)	<p>[별표 3] 부설주차장의 설치제한 지역에서의 시설물의 종류별 설치기준(제21 제2항 관련)</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 10px 0;"> <thead> <tr> <th style="width: 50%; text-align: center;">시 설 물</th> <th style="width: 50%; text-align: center;">최고한도</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1. ~ 2. (현행과 같음)</td> <td style="text-align: center;">(현행과 같음)</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의 청사</td> <td style="text-align: center;">시설면적 200㎡당 1대</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4. ~ 8. (현행과 같음)</td> <td style="text-align: center;">(현행과 같음)</td> </tr> </tbody> </table> <p><비고> 1. ~ 11. (현행과 같음)</p> <p>12. 제3호의 시설물을 신축 또는 증축하는 경우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의 긴급자동차를 대상으로 구분된 주차장의 주차대수는 부설주 차장 주차대수의 최고한도를 산정할 때에 포 합하지 아니한다.</p>	시 설 물	최고한도	1. ~ 2.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의 청사	시설면적 200㎡ 당 1대	4. ~ 8.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시 설 물	최고한도																
1. ~ 2. (생략)	(생략)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의 청사	시설면적 500㎡ 당 1대																
4. ~ 8. (생략)	(생략)																
시 설 물	최고한도																
1. ~ 2.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의 청사	시설면적 200㎡ 당 1대																
4. ~ 8.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